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보건위원회)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유영 청

1. 제안경위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6년 10월 31일 중구 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일 행정·보건위원회로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청계천복원을 계기로 계획적인 도심재개발 및 낙후지역의 쾌적한 도시환경 개선 등 도심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추진하고 활력이 넘치는 도심재생 업무와 중구위상회복을 위한 체계적인 도심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전문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하고자 우리구 공무원 정원을 직렬·직급별 정원책정기준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조직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가. 도시계획분야 전문계약직 공무원 신규채용에 따른 정원조정
- 행정9급 감1명 ⇒ 전임계약직(도시계획) 나급 증 1명
 - 행정9급 감1명 ⇒ 전임계약직(도시계획·건축) 다급 증 1명

4. 검토의견

- 동조례안은 도심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우리구 총정원 1,306명은 변동없이 행정9급 2명을 감하고 계약직 나급(6급상당)1명, 다급(7급상당)1명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규정에 저촉되지 않으며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 따라서 상기 업무를 위한 전문인력을 채용함에 있어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 제3조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우수한 인력을 채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5.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

- 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 나.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부칙)
- 다.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현행)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4조 (표준정원의 책정) ①지방자치단체는 정원관리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정원(이하 "표준정원"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부칙)

④(보정정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현정원이 보정정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는 현정원과 보정정원이 일치될 때까지 매년 보정정원과 표준정원의 차이에 해당하는 정원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정원을 책정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신규 행정수요의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책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현행)

제2조(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중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1,306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1,306명
2. 의회사무국의 정원 : 26명